

대구광역시건축사회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지침

제정 2017. 9. 12.

개정 2018. 7. 11.

개정 2019. 10. 7.

제1 () 이 지침은 “ (“ ”) 공사감리위원회”(“ ”) (“ ”) 공사감리운영세칙(“ ”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회원 간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사감리업무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 () 운영세칙 제2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 후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예외 적용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10.7.>

1. 추진허가 건축물
2. 지적 불일치지역 등
3. 기타 감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건축물

제3 () 신규 회원은 협회 입회와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.

제4 () ① 건축공사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연면적의 변동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사용승인 신청 전에 정산한다.

1. 연면적 합계가 10% 이상 증감된 경우
2. 증감되는 연면적 합계가 50 ㎡이상일 경우
3. 변경된 용도 및 계약면적으로 대가산출한 금액이 계약금액에 5% 이상 증감될 경우

② 이 지침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건축주가 본인의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기 납부한 운영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③ 공장, (. .) 도 건축물은 감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운영회비의 1/2 .

제5 () ① 이 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.

② 회장은 제1

제6 ()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() <2016.9.12. >

제1 () 이 지침은 2017. 9. 25.

() <2018.7.11. >

제1 () 이 지침은 2017. 9. 25.

() <2019.10.7. >

제1 () 이 지침은 2019. 11. 1.